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94

발의연월일 : 2021. 4. 29.

발 의 자: 김수흥·양정숙·박완주

안규백 • 김진표 • 김경만

김교흥・유동수・고용진

양기대 · 강병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장기화에 따라 농림어업 부문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('20년 국내총생산 연간 성장률 : (전체) -1.0%, (농림어업) -3.4%)하고,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·조류독감(AI) 등의 가축질병이 끊이지 않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.

이러한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.

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,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, 농업인의 융자·예금에 대한 인지세 면세 등 2021년말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함(안 제66조 및 제68조).
- 나.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 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 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(안 제106조제1항).
- 다. 농어민의 영농·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 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(안 제106조의2제1항).
- 라.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높이고, 조합원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(안 제116조).
- 마.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(안 제121조의23제10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4년 12월 31일" 로 한다.

제6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 전단,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 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16조제1항제5호 단서 중 "1억원"을 "2억5천만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颜 개 정 안 제66조(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제66조(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) ① 「농어 법인세의 면제 등) ① -----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(이하 "영농조합법인"이라 한 다)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 ----- 2024년 12월 3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1일 ----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(이하 "식량작물재배업소득"이라 한 다)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 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. -----.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(2) ----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12월 31일 -----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 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 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 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. 이

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 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 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 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 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 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 율은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, 그 배당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「초지법」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 지(이하 "초지"라 한다)를 영농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(현물출자와 관 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)

| ③ |
|---------------|
| |
| |
| <u>202</u> |
| 4년 12월 31일 |
| |
| |
| |
| |
| |
| |
| 4 |
| 2024년 12월 31일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
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해당 농지 또 는 초지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 거지역 ·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(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, 제69조의 2부터 제69조의 4까 지 및 제70조에서 "주거지역 등"이라 한다)에 편입되거나 「도시개발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(換地處 分)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 입되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⑤ • ⑥ (생 략)

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
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
 영농조합법인에 「농업・농촌
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

| <u>.</u> |
|----------------------|
| ⑤·⑥ (현행과 같음) |
| ⑦ |
| <u>2024년 12월 31일</u> |
| |
| |

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·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(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)을 현물출 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.

⑧ ~ ⑩ (생 략)

제68조(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 인세의 면제 등) ①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(이하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 다)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 하고,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 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

| <u>.</u> |
|--------------------|
| ⑧ ~ ⑩ (생 략) |
| 제68조(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 |
| 인세의 면제 등) ① |
| |
| |
| |
| |
| <u>2024년 12월 3</u> |
| 1일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
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 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 인(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업법 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 한다)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(현물출자와 관련 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)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해당 농지 또 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 되거나 「도시개발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 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

| ② |
|---------------|
| 2024년 12월 31일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
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 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다.

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·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 는 부동산(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)을 현물출 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제6 6조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 다.

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 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,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

| . |
|---------------|
| ③ |
| 2024년 12월 31일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. |
| 4 |
| 2024년 12월 31일 |
| |
| |
| |
| |
| |
| |

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배당 성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른다.

⑤ · ⑥ (생략)
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 호의 2, 제5호, 제9호의 2, 제9 호의 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 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 에만 적용하고, 제2호, 제3호, 제4호의 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 2 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 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 고, 제8호의 3은 2015년 1월 1 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

| | ⑤·⑥ (현행과 같음) |
|---|-------------------|
| 줴 | 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|
| | ①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<u>2024년</u> |
| | 12월 31일까 |
| | |
| | |
| | |
| | |
| | |

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 용한다.

- 1. ~ 12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- 제106조의2(농업 · 임업 · 어업용 7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석유류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| 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면세유"라 한다)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 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. 교통 · 에너지 · 환경세,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 세(이하 이 조에서 "자동차세" 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. 이 경 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 고,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 다.
 - 1. 2. (생략)

② ~ ② (생략)

제116조(인지세의 면제) ① 다음 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, 「새마 을금고법」에 따라 설립된 새 마을금고, 「농업협동조합 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, 「엽 연초생산협동조합법 | 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라 설 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 (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) 이 해당 조합(어촌계를 포함 한다) 또는 그 중앙회(「농업 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 행과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)로 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 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, 다만, 동일인이 받는 융

| ② ~ ②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-----|
| 제116조(인지세의 면제) ① |
| |
| |
| |
| 1. ~ 4. (현행과 같음) |
| 5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
| 자금액의 | 합계액이 | <u>1억원</u> 을 |
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초과하는 | 경우에는 | 그러하지 |
| 아니하다. | | |

- 6. ~ 30. (생략)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· 2. (생략)
- 3. 제5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
 제11호 및 제19호는 2021년 1
 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
 문서에만 적용
- 4. · 5. (생략)
- 제121조의23(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)
 - ① ~ ⑨ (생략)
 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 치세를 면제한다.
 - 1. 2. (생략)
 - ① (생략)

| -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|
|--|
| 6. ~ 30. (현행과 같음) ② |
| 1.·2. (현행과 같음) 3 |
| <u>2024년 1</u> <u>2월 31일</u> |
| 4.·5. (현행과 같음) 제121조의23(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 |
| ⑩ |
| 1.·2. (현행과 같음) ① (현행과 같음) |

----- 2억5천만위